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4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
전부개정규칙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9.

운 영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9.

운영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- 발 의 자: 도하석 의원 등 10명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검토기간: 2025. 9. 4.(목) - 2025. 9. 10.(수)

2. 개정이유

-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에 권고한 개정된 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(안)’에 따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을 전부개정하여,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구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출장계획서 게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(안 제5조 및 제6조)
- 다.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라. 심사기준,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- 마.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예산 편성·집행(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)
- 바.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4. 검토의견

-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공식행사 초청, 국제회의 참석, 자매결연체결 등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
-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개정된 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(안)’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에 참여하는 지방의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고,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,
-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누리집에 게시하며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, 심사위원회 의결 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
-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 60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, 그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지체없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
- 출장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하도록 하고,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의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며, 징계를 받는 경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
-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에 따라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하고, 공무국외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98조(징계의 사유)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: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
2.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: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의정비심의회”라 한다)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
3.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: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제69조(징계사유)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,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
 2. 직무상의 의무(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
 3.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② 공무원(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)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